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가단50711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대식, 이진원

피고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환

변론 종결2024. 9. 27.

판결 선고2024. 10. 25.

주 문

-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D 사이의 2020. 11. 13.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D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20. 11. 13. 접수 제529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D 소유의 3,294/19,76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D 사이의 2019. 8. 21.자 매매예약을 213,076,723원 및 그 중 148,328,351원에 대하여 2024. 8. 31.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13,076,723원 및 그 중 148,328,351원에 대하여 2024. 8. 31.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연 12%의,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D 사이의 2019. 8. 21.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64,671,014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4,671,0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9. 8. 2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3,294/19,762 지분,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2019. 8. 3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8. 30.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부터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여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되,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8. 30.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F, 보험가입금액 200,000,000원, 보험기간 2019. 8. 30.부터 2020. 8. 29.까지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는 2019. 9. 30.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2020. 11. 6. 소외 회사의 F에 대한 채무가 198,319,545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0. 11. 13. F에게 198,319,545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45828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2. 17. '소외 회사,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059,833원 및 그 중 148,328,351원에 대하여 2020. 12. 14.부터 2021.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D는 2020. 11. 13.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자 자신의 딸인 피고 C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을 그 순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같은 일자 접수 제52901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회사는 2021. 5. 24.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1부동산 중 3,294/19,76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였고, 2021. 5. 28. 주식회사 G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졌다. 2022. 9. 30.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H인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021. 10. 5. 이 사건 2, 3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2, 3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D인 J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었는데, 2022. 8. 1.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1, 2, 3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소외 회사와 F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이 갱신됨에 따라 갱신된 것으로 2018. 8. 30.경부터 이 사건 보증보험과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갱신 당시인 2019. 8. 30. 당시 소외 회사의 F에 대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지급채무가 존재하고 있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F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D도 자신의 딸이자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I의 부탁을 받아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외 회사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1, 2,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한 각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이후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부동산의 공동담보액인 321,511,335원[= (이 사건 1부동산의 공시지가 3,248,872,800원 - 위 부동산에 설정된 2010. 9. 29.자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 위 부동산에 설정된 2010. 9. 29.자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840,000,000원) × 3,294/19,762지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액인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2, 3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이후 J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위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액인 64,671,014원(= 위 부동산의 공시지가 161,628,800원 -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96,957,7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회사와 F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및 물품대금지급채무의 존재, 2018. 8. 30.경 성립했던 보증보험계약의 존재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할 뿐이고, D가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거나, C의 부탁을 받고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고와 D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 사건 1, 2, 3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이후인 2019. 9. 30.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1, 2, 3부동산에 관한 2019. 8. 21.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

3. 이 사건 4부동산에 관하여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채무초과 여부 가)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4부동산 외에 경기 양평군 K 도로 23m²(2020년 공시지가 기준 가액 103,960원)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당시 D가 이 사건 1, 2, 3부동산을 소유하기는 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 198,319,545원 및 J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 96,957,786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D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D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1억 원이 매매대금채권과 이 사건 2, 3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1억 2,600만 원의 매매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 외에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약 216,240,000원 상당의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주식 40,000주, L에 대한 2억 3,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그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하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가 2019. 9. 10.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로부터 L의 주식 40,000주를 4억 원(계약금 1억 원, 잔금 2019. 9. 26. 지급)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2019. 9. 10. 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M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된 사실, M의 대표이사이던 N가 2019. 9. 26. 주식매수대금 3억 원을 양수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 L이 2019. 9. 26. D가 L 미발행 주식 40,0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D에 대한 주주명부가 제출되지 않은 점, N는 D의 자녀이고 2021. 12. 1.까지 M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L에서도 1999년부터 2019. 3. 29.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 청산인으로 재직하였으며, L의 대표이사인 O은 C의 배우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D가 L 주식 4만 주의 주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부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주식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 통상적인 시가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L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1억 원에서 -8억 7,000만 원의 이익잉여금을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8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재무제표를 제시하지 않아 감사를 받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L 주식 40,000주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실 및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식가액을 더한 D의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 가액을 넘어 무자력 상태에서 해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이 2021. 6. 28. D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24. 6. 27.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2021. 6. 28. L 명의의 예금계좌에 2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 위에서 본 D와 L 사이의 인적관계 및 금전송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D의 L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L의 재무상태, 변제기인 2024. 6. 27.이 도과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대여금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D의 사해의사 및 피고C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C가 D에게 2019. 8. 13.부터 2019. 2. 28.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D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4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나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의 사태에 있는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다른 채권 등 적극 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4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성철

별지